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26(화) 10:00

##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47호
- 나. 제 출 자 : 엄셋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 2. 제안이유

이스포츠는 4차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 및 이스포츠 시설 설치·운영(안 제4조 ~ 안 제5조).
- 라. 표창(안 제6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11. 15. ~ 2024. 11. 21.

## 5. 검토의견

### 가. 제정 이유

본 제정안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 및 구민의 여가 활동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 나. 주요 내용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제2조 정의 :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규정함.

e스포츠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타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지적 능력 및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기이다. 대회 또는 리그와 같은 현장으로의 참여, 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중계의 관전, 그리고 이와 관계되는 커뮤니티 활동 등의 사이버 문화 전반 또한 e스포츠 활동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e스포츠 [e-sports] (스포츠 백과, 2008., 대한체육회)

####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3) 사업 및 이스포츠 시설 설치·운영(안 제4조~안 제5조).

-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의 내용을 규정함.
- 이스포츠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운영을 규정함.

#### 4) 표창(안 제6조).

### 다. 검토 의견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90년대 말 컴퓨터 게임 및 전자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e스포츠는 2001년 한국e스포츠협회 창립 후 선수 관리, 경기 규칙, 대회 방식이 체계화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음.
- 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이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이스포츠법 )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